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64호서식] (앞쪽)

재산세 [과세대상] 변동 신고서

처리기간
즉 시

납세의무자				
	① 성명(법인명)		② 주민(법인) 등록번호	
	③ 상호(대표자)		④ 사업자등록번호	
	⑤ 주소(영업소)			
	⑥ 전화번호	(휴대전화:)	⑦ 전자우편주소	

⑧재산소재지	⑨재산 종류	⑩용도/구조 (지목)		⑪면적 (수량)	⑫취득 일자	⑬변동사유	
		공부상	현 황			연월일	사 유
수원시 장안구	부동산	일반 건축물	주택				주택 세율 적용

※ 안내사항

○ 본 신고서는 오피스텔(일반건축물)로 과세된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를 요청하는 신고서입니다.

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시에는 신규아파트 분양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②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신 분은 부가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.

③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④ 전기요금이 일반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⑤ 지방세(취득세) 부과시 주택의 수(2020.8.12.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부터 적용)에 포함되어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.

※ 오피스텔 매매 및 사무용으로 사용전환시 반드시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민등록사항 열람에 동의합니다. □

「지방세법」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[과세대상]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수임자 (서명 또는 인)

장안구청장 귀하

※ 첨부서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	수수료 없 음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작 성 방 법

□ 납세의무자란

①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
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③ 상호(법인명): 개인사업자는 상호명,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.

④ 사업자등록번호: 「소득세법」,「법인세법」,「부가가치세법」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,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.

⑤ 주소(영업소):

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
⑥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
⑦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
□ 과세대상란

⑧ 재산소재지: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.

⑨ 재산 종류: 토지, 건축물,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⑩ 용도/구조(지목):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,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⑪ 면적: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(㎡)을 적습니다.

⑫ 취득일자: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(잔금완납일 등)를 적습니다.

□ 변동내역란

⑬ 변동사유: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.

⑭ 소유자: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□ 문의사항은 시(군·구) 과(☎ -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